

2009년도

농림사업시행지침

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각종 농림사업과 관련,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을 알리고자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. 본내용은 지면관계상 요약된 것으로,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는 농가는 농식품부나 시군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.

I. 사육기반확충

1.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

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한우·낙농조합 및 지역 농·축협, 한우회·낙우회 등

- 재배농가 :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

〈재배농가 유형〉

- 지역 농·축협 등 경영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
- 파종,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·축·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농가

-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,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농가
-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농가
- 경종과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영농 농가(겸업농가)

- 축산농가 :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, 섬유질가공사료업체, 지역 농·축·낙협, 영농법인, 한우회, 낙우회 등

2. 지원대상

- 동·하계 사료작물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용,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사일리지 제조비 :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비용
- 유통비 : 생산된 사일리지를 타 시·도로 판매할 경우 장거리 운송비 지원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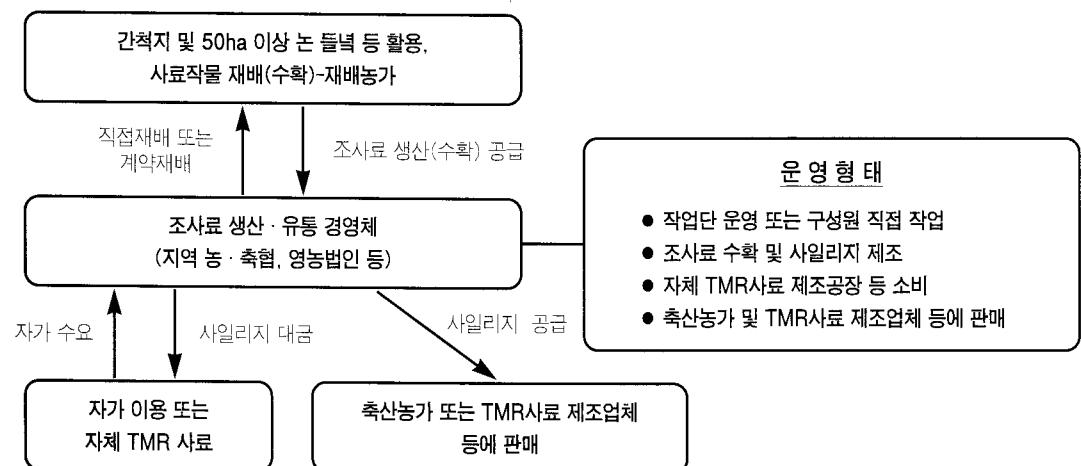
- 사일리지 제조비 : 보조 100%(축발기금 보조 60%, 지방비 40%)

- 유통비 : 축발기금 보조 50%, 자담 50%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사일리지 제조비 : (동계 사료작물) 60천원/톤, (하계 사료작물) 20천원/톤
- 시·군에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시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로 하여금 중량을 계근토록 하고,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함
- 유통비 : 실 운송비의 50% 이내에서 지원하며, 지원 상한액은 30천원/톤 임

【조사료 생산·유통체계 및 운영방법 예시】



○ 경영체의 사료작물 사일리지 생산·공급계약 체결

-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
- 경영체는 보리·호박 등 품목에 따라 재배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
 - 경영체는 재배농가 소재 시·군에서 선정(지방비 확보)
 - 공급가격은 kg당 110원 내외로 하여 시·군과 경영체가 협의하여 결정
 - 재배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,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기격결정 및 인수 제외
 -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·군에 재배농가 및 경영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
 -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재배농가에게 지급

- 경영체 운영방법
 -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·공급 계약 추진
 - 경영체는 사료작물을 예취·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
 -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·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
 -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·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, 시·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유한 장비를 경영체에 우선 임대
 - ※ 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임대 추진

- 제조비 및 유통비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〈별표 4〉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호 사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체도 지원 가능

②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개별농가 : 한우·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농가, 15㏊ 이상 규모의 경종 농가(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시에 한함)
- 영농조합법인, 농업법인회사 : 농업·농촌및식 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농·축·낙협 :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·축협, 한우·낙농조합

2. 지원대상

-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 :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
 - 기계·장비 보조지원 대상에서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
- 개별농가 :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기계·장비, 시설 등
 -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

- D사일로유형 : 철근콘크리트 트렌치, FRP 사일로 등
- 사일로용량(1기당) : 50톤(78m³)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
- 기타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기계·장비 등
 - 동력원 : 트랙터, 경운기 등
 - 부속작업기 : 경운·쇄토기, 파종기, 비료살포기, 농약살포기, 퇴비살포기, 예취기 등
 - 처리장비 : 수확기, 집초기, 절단기 등
 - 운반장비 : 로다, 트레일러 등
 - 이용장비 :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
 -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(50평이내)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·장비 구입비
 - * 공사가 진행 중인 간척지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통해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 기존 보유한 기계·장비를 활용토록 하고, 기계·장비 지원을 제한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 : 축발기금 보조 40%, 지방비 40%, 자담 20%

- 개별농가 : 융자 80%(연리 3%, 3년거치 7년 상환) 자담 20%

* 영농조합법인 및 농·축협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개별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보조지원 : 사업단가는 30㏊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(150백만원)를 산정한 것이며, 재배면적

이 15㏊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

※ 예시)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㏊일 경우 30㏊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(100백만원)하여 지원금 산정

- 융자지원 : 기 융자지원분(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)을 포함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

- 개별농가(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) : 5억원 이내

-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%이내,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% 이내

③ 벗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축산업등록농가, 한우회·낙우회 등 협업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한우·낙농조합 및 지역농·축협

2. 지원대상

- 암모니아 처리비 및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벗짚 등 활용을 위한 암모니아 가스 구입비 및 처리비

- 벗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비닐랩 사일리지를 제조할 경우 비닐 구입비 지원

- 처리규격 : 사일리지 1롤(500kg) 당 4겹 기준
(추가비용 자부담)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축발기금 보조 40%, 자부담 60%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'09년 암모니아 처리비 지원단가는 지역실정에 맞는 시·군별 실거래가격으로 하되, 예산 형편상 보조지원은 '07년 공급단가(112,499원/1기)의 40%를 상한액으로 하며,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등으로 처리. 공급단가 하락시 상한액 조정 계획

※ 암모니아 처리비는 '09년까지만 지원하며, '10년부터는 지원 중단할 계획이므로 시·도 및 농협중앙회에서는 농가가 차질없도록 사전 지도·홍보 철저

-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·공급 가능

- 단,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

※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(준비사항, 공급단가 계약체결, 기술지도 등)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, 시·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

④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“②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”과 동일함

2. 지원대상

- 초지조성 :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,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기반시설 :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〈초지조성〉

- 초지조성 : 초지조성(경운·불경운·임간초지)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·자재대·측량 수수료 등 지원
 -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“초지조성단비”를 기준으로 하고,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 만 정산
 - 동일한 용도(시설)에 대해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에서 중복지원 불가
-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
 - 경운초지 : 토지등급이 1~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
 - 불경운초지 : 토지등급이 2~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,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
 - 임간초지 :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

– 토지등급별 판정기준

등급	경상도	유효토심	자갈함량	토성
1급지	20°이하	100cm	5%이하	사양토, 양토
2급지	21~30	99~50	6~20	식양토, 식토
3급지	31~35	49~30	21~30	사토, 증점토
4급지	36 이상	29 이하	31 이상	입시질토

-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·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,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재자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(다만,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)
-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
 -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, 축사부지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
-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·중급초지를 중·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

〈기반시설〉

- 용수개발, 전기시설, 진입도로·목도 개설
 - 용수개발 : 지하수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,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
 - 전기시설 :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(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)
 - 진입로(목로)개설 : 초지의 진입도로·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, 보수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
- 초지·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
 -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·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,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 - 지원기준 : 총 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

- 하여 지원하되 2~3개 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
 - 시장·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
- 초지용 목책설치
 -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
 - 지원기준 : 3ha당 1km 설치하고, 2ha 이상 초지조성시 지원
 - 대상시설
 -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(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)
 - 철재앵글,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, 철선 등의 시설
 -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초지조성 : 축발기금 보조 50%, 축발기금 용자 50%
- 기반시설 : 축발기금 용자 80%, 자부담 20%
 - ※ 용자조건 : 연리 3%, 3년거치 7년 상환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용자금 지원기준은 “②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”과 동일함
- 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(퇴·액비 활용)
-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,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

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“②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”과 동일함

2. 지원대상

- 옥수수, 청보리, 호밀, 귀리(연맥)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·목초 종자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축발기금 보조 40%, 자부담 60%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청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한함
- 종자구입비는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지역 농·축협 및 낙농육우협회 등을 통해 구입한 비용(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)을 지원
-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·군, 지역 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·확인
- 경관보전작물제에서 적불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 종자공급 절차

종자신청

- 사업대상자가 시·군,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

종자공급

- 국립종자원,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공급

**종자대
지급**

-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농·축 협조합 등에 납부
-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 금 지급

○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

- 자담분 :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
- 보조분 :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 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(인수증 또는 현지 확인)하고, 농협중앙회(도지회)에 축발기금 지급요청
-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

산 업체(영농조합법인)

○ 공동자원화시설

-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·군 중 1일 100톤 이상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

○ 정착촌구조개선

- 전국 한센병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·법인체 등

○ 액비저장조시설

- 전문유통주체 : 시장·군수가 구성·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,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
 - 축산·경종농가 :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, 저장 조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한 농가
- ※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,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우선지원

○ 액비유통센터

-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 이상 확보하고 경종·축산농가와의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

○ 액비살포비

- 시장·군수가 구성·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,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

○ 액비성분분석기

-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·군 농업기술센터

2.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개별시설

-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, 축산단지, 축산 계열사업주체(소·돼지·닭), 농업법인, 농·축협

*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: 액비저장조 및 퇴 비사 지원

* 공동퇴비장 :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, 퇴비 생

2.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

- 개별시설 : 가축분뇨처리 시설 · 장비 구입비
 - 퇴비 · 액비화시설 : 퇴비화 시설(건조식 · 통풍식 · 교반식 등), 액비화시설, 퇴비사, 건조장,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, 액비화 전처리시설,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
 -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(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 · 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, 다만,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'10년부터 시범사업 추진 계획)
 - 정화방류시설 :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
 - 부대 기계 · 장비 : 왕겨분쇄기 · 왕겨팽연화장비, 분뇨운반탱크(암롤박스), 축분발효기계 · 장비, 축분이송스크류, 고액분리기, 퇴비 · 액비살포장비(단, 트랙터, 경운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), 악취제거 장비, 정화방류수 탈색장치, 바륨카, 암롤카, 축분 · 액비운반차량, 스키드로더, 축분퇴비포장기
 - 공동퇴비장 :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, 후숙 · 제품보관 창고
- ※ 다음 시설 · 장비는 개별농가 지원 제외 :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, 바륨카, 암롤카, 축분 · 액비운반차량, 스키드로더, 축분퇴비포장기, 공동퇴비장
- 공동자원화시설 : 가축분뇨 퇴비 · 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 · 장비
- 정착촌구조개선 : 한센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
- 액비저장조시설 :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(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) 및 폭기시설(펌프식 교반시설 등)의 구입비
 - 고정식 액비저장조(200톤 이상 등) 여러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(1단계 → 2단계 → 3단계 등)하도록 권장
 - 대규모(200톤 이상)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 · 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(다만, 지원비를 시 ·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)
 - 소규모(10톤 내외 규모)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설 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(예 :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)
- 액비유통센터 : 바륨카, 액비살포 차량(트랙터 포함), 액비살포기,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 · 운반 · 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
- 액비살포비 :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
- 액비성분분석기 :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

3. 지원형태(조건) 및 사업 의무량

- 재원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)

● 농림사업시행지침

○ 지원비율(%)

세부사업명	국비 보조	지방비	국비 융자	자부담	융자조건
개별시설	30	20	50		10년(3년거치 7년균분상환), 연 3%
공동자원화시설	50	30	20		
정착촌구조개선	70	30			
액비저장조시설	30	50		20	
액비유통센터	40	40		20	
액비살포비	50	50			
액비성분분석기	50	50			

※ 대규모(200톤 이상)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 시·도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음

※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(다만, 공동자원화시설 융자금은 대체 불가)

4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사업비 산정기준

- 개별시설,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m^2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·적용

(단위 : 천원/ m^2)

축 종	돼 지	한·육우	젖 소	닭	
				평 사	케이지
단 가	74	30	35	21	34

※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(관리사, 참고면적은 제외)

② 젖소 운동장의 비기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·산양·개는 닭 평사, 말·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

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^2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

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가 보다 실제 공시단기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

⑤ 2003.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%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·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(창고형 건물은 제외)

- 단,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·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

⑥ 한센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·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

⑦ 무청돈사(또는 무청계사)의 경우 사업비 단가의 40%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

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·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(축사 m^2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) 초과시 축사 m^2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

○ 사업비 지원 한도액(개소당 기준)

(단위 : 백만원/개소)

구 분	돼 지	한 우	젖 소	금	
				평 사	케이지
개별시설	개별농가	400	200	200	
	법인체 등	2,000	800		1,000

* 공동퇴비장 :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/개소

공동자원화시설	3,000
정착촌구조개선	개별시설에 준함
액비저장조설치	17(200톤 규모기준, 폭기·교반 시설 포함)
액비유통센터	200(최초지원시)
액비살포비	200천원/ha
액비설분분석기	24

- ※ ① 사업비에 설계비·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
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
③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(폭기·교반 시설 포함) 1기당 지원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,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
* 액비저장조 지원단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·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
④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,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
⑤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

○ 부대 기계·장비의 지원 한도액

- 가축분뇨 퇴·액비처리 장비 : 10백만원 이내
(다만,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)

- 정화방류수탈색장치 : 30백만원이내
- 가축분뇨 운반·살포용 차량 : 80백만원
-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: 30백만원

※ 고액분리기의 경우 한국축산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(책자는 별도 제공)

3. 낙농체험관광사업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낙농경력 5년 이상인 낙농가 또는 낙농후계자로서 목장환경이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목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낙농가
-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“축산업의 등록대상”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는 제외

2. 지원대상

- 체험시설설치 : 관람용 트레일러, 치즈체험장 및 제조설비 등

- 환경개선 : 사용자 편의시설, 진입로 및 주차시설 포장공사 등
- 프로그램 개발 : 체험목장 연수교육, 홈페이지 구축, 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낙농체험관광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험시설 설치비, 환경개선비, 체험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하여 응자지원

* 자금지원 용도

- 목장 관람용 트렉터 트레일러 제작
- 치즈 체험장 건립 또는 치즈 제조설비 구입
- 체험객 편의 시설(휴게공간, 옥외 화장실 등) 공사
- 진입로 확장(포장) 또는 주차장 공사
- 국내·외 낙농체험목장 연수교육
- 소비자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
- 기타 낙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조건 : 응자 100%(부이자, 3년거치 7년 균 분상환)
- '09년 사업지원 개소수 및 금액 : 4개소 400백 만원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개소당 기준 지원금액 : 100백만원

* 지원 신청내역을 감안하여 기준 한도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(개소수, 지원금액 등)

II. 생산 및 유통개선

1.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- '06.1.1 이후 축산업(소 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, 오리사육업, 낙농업)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 외(축산업 등록제 기준). 다만,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,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2. 지원대상

- 사업내용 :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
 - *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
 - *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
 - 한(육)우 : 축사 및 내부기자재(급이·급수, 소독·환기시설(공기정화기 등), 온·습도 조절장치 등), 폐사축 처리시설
 - 낙농 : 축사, 착유시설, 디지털 유량계, 냉각

기, 폐사축 처리시설 등(로봇착유시설 제외)

4. 지원형태 및 사업량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젖소의 축사 및 사육시설

-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
- 보조 30%, 융자 50%(연리 3%, 5년거치 10년상환), 자담 20%
* 융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
- 사업기간 : 1~2년(사업계획에 의함)

〈2009년도 예산안 내용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량 (개소)	사업비					
		사업비 합계	예산액			지방비 (-)	자부담 (20%)
			계 (100%)	보조 (30%)	융자 (50%)		
계	502	124,424	99,539	37,327	62,212	-	24,885
1. 한(육)우	193	32,829	26,263	9,849	16,414	-	6,566
2. 양돈	140	49,000	39,200	14,700	24,500	-	9,800
3. 양 계	72	24,192	19,354	7,258	12,096	-	4,838
4. 오리	12	3,528	2,822	1,058	1,764	-	706
5. 낙농	85	14,875	11,897	4,463	7,434	-	2,975

주) 예산액은 1년차에 지원사업비의 70% 적용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구분	사육시설 면적당(m^2) 지원한도액	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	개소당 사업비	
			지원한도액	총사업비
한(육)우	216천원/ m^2	-	200백만원	250백만원
낙농	185천원/ m^2	-	200백만원	250백만원

2. 축산공제사업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가) 지원조건

○ 가축공제료 및 보험료(이하 “공제료”라 한다) 지원 : 축발기금보조 50%,가입자 부담 50%

나) 지원 제한사항

- 축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 농가는 공제료 정부지원 제외
 - 가축공제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입 신청시 축산업등록증 사본첨부 또는 청약서에 축산업등록증명번호 기재
-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(시설포함)에 한하여 정부지원 가능. 다만, 가축은 사육시설(건물) 적법

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
(건물의 적법여부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
건축물관리대장으로 확인)

* 소방재난청에서 실시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
자는 기축공제 축사특약에 대한 정부의 공제료 지
원 제외

2. 지원대상

○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
축산업 관련법인(이하 “농업인”이라 말한다)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농업인의 공제가입 축진과 공제료 부담경감을
위해 가축공제(보험) 가입시 납입하는 공제료 일
부 지원

4.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○ 축발기금 보조 50%, 자부담 50%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지원한도액 : 예산범위내에서 농업인이 납입하
는 공제료의 50% 보조

* 공제요율은 사업시행자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
금융감독원에서 인가받은 요율 적용

○ 사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

구 분	소			축 사
	I (송아지)	II (큰소)	종모우	
가입대상	생후 2~12개월 미만	한(육)우 12개월~13세 미만 (젖소는 8세미만)	종모우	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
가입형태	대상연령 포괄가입	포괄가입	개별가입	포괄가입
지원비율	납입 공제료의 50%			

○ 축종별 보장내용(시가의 80%~100%까지 지급)

구 分	보장범위 (보상하는 사고)	보장내용 (공제금 지급)	가입대상
소 사슴 양	한우 둘우 젖소 사슴 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(풍·수해·설 해등 자연재해, 화재)등으로 인한 폐사 부상(사지골절, 경추골절, 탈골), 난산, 산육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80%까지 보상
	종모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, 난산, 산육마비,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즉 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 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가입금액의 80%까지 보상
축사	화재, 풍수해, 설해에 의한 손해	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	

※ 세부 보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

3. 품질고급화 장려금지원

1.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지원자격

- 소는 「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받은 한·육우의 거세우로서 해당 한·육우를 3개월 이상(이하 이동신고 완료시부터) 사육했다는 증빙이 가능한 생산농가 및 법인(단, 2009.6.21까지는 이력제 미등록우라도 지역 농·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 증명이 있는 경우 해당)

○ 제한요건

- 출하우중 이력제 등록 개체식별번호가 불일치하거나, 3개월이상 사육했다는 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, 지역 농·축협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

2. 지원대상

- 한우 거세우를 출하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등급 1+등급 이상 받은 농가 및 법인
- 육우 거세우를 출하하여 등급판정결과 육질등급 1등급 이상 받은 농가 및 법인

3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거세한 한우와 육우를 출하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장려금 지급

4. 지원형태 및 사업업무량

- 사업재원 : 축산발전기금
- 지원조건 : 기금보조 100%
- 지급대행기관 : 지역 농·축협
- 지원방법
 - 지역 농·축협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한 내용과 장려금 지급을 요청하는 대상자와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지정계좌로 입금
- 지급유효기간 :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
- '09년도 사업량 : 소(78천두)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한우

- 거세우중 육질 1++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200천원/두
- 거세우중 육질 1+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100천원/두

○ 육우

- 거세우중 육질 1+이상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200천원/두
- 거세우중 육질 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에게 장려금 100천원/두